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7,612,331	12,828,370
일반회계	412,508,392	12,375,252
특별회계	15,103,939	453,118
기타특별회계	15,103,939	453,11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2,103,769	363,113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	10,579	317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738,771	22,163
의료보호비특별회계	1,154,133	34,624
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	17,296	519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1,079,391	32,382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0,346,726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1,600,079천원이며, 재해·재난예비비는 8,746,64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